

도덕적 위험(Moral Hazard)과 보험



양 돈 모
(국제손해사정 대표이사)

1 머리말

동남아에서 시작된 세계 경제의 위기는 아시아 각국을 거쳐 급기야 러시아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고, 안전지대라고 생각되던 미국과 유럽 경제에도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기에 이르렀다.

작년 말 국제통화기금(IMF)의 지원을 받아 외환 위기를 넘긴 우리 나라 경제도 또 다시 높아지는 파도에 대처 방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고, 국내 경기는 더욱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경제 위기는 실업 증가와 경기불황, 사회적 불안으로 연결되고 이에 따른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증가는 사회, 경제분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보험계약은 그 사행성 때문에 최대선의의 원칙을 중요시하고 있으나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폐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에 대비하여 더욱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것이다.

2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넓은 의미에서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은 부주의, 무관심, 기대심, 사기 저하, 풍기문란 등 정신적 해이(Moral Hazard)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나 좁은 의미로는 사람의 부정, 부도덕, 사기, 고의 등의 감정이 적극적으로 작용해서 사고를 발생시키거나 증가시키려는 상태를 뜻하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이러한 상태에서 보험금 취득을 목적으로 고의 또는 사기로 보험 사고를 유발시키거나 이미 발생된 사고의 손해를 고의로 확대하려는 위험을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이라 한다.

보험계약자가 방화로 악성재고를 매각한 것과 같은 효과를 노린다던가 보험사고 발생 시 다른 손해를 편승 수리하려는 심리가 그 예이다.

도덕적 위험의 폐해를 살펴보면,
첫째, 보험의 본질에 반한다.

보험의 본질은 우연한 사고를 확률로 계산하여 기금을 마련하고 보험단체를 구성하게 되는데 고의적인 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확률 계산이 왜곡되고 보험자의 불확실성이 증대된다.

둘째, 보험단체의 불이익이 증대된다.

도덕적 위험에 의한 보험사고로 인해 증가된 보험급부는 결국 보험단체 내의 선량한 계약자가 부담하게 되어 형평성을 해치게 된다.

셋째, 사회 공익에 반한다.

도덕적 위험은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를 유발케하고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여 공익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3 도덕적 위험의 유형

도덕적 위험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가 있을 수 있고, 가장 발견하기 어려우며 가장 피해가 클 수도 있다. 일반적인 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가. 자기이익의 결여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재산을 파괴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경우 즉,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 보다 보험금을 타는 것이 더욱 유리한 경우이다. 저당권이 설정된 재물이 매매가격 하락으로 매각대금이 대부금에 미달할 경우 “전손으로 보험회사에 팔자”는 유혹이 생기게 되는 것이 그 예이다.

나. 의심스런 행위의 기록

보험계약자가 과거에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의심스러운 행위 즉, 사기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 미래에도 그러한 행위를 되풀이할 위험이 증가한다.

다. 좋지못한 사업평판

비윤리적인 사업거래를 하는 사람은 기술적으로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자 한다.

라. 책임회피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수단을 이용한다.

마. 복수

복수의 수단으로 재산을 손괴하는 경우가 있다. 해고된 고용인이 고용주의 재산에 방화하는 것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바. 범죄의 은폐

범죄의 은폐를 위하여 고의로 발화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도덕적 위험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 (1) 손해보상제도
- (2) 보험자의 해지권
- (3) 보험계약시 인수요건 강화
- (4) 손해조사 강화

등이 있으나 여기서는 특히 손해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자 한다.

4 도덕적 위험으로 인한 보험 사고의 사례

○○산업(주)

가. 개요

1995년 3월 21일 24:00경 충남 연기군 동면 용호리에 소재한 ○○산업(주)에서 실화로 추정되는 화재사고가 발생하여 발화건물(전체 공장규모의 80% 상당)을 전소시킨 후 옆공장으로 연소되다가 진화된 화재사고가 발생.

나. 사고 당시의 공장상황

동 계약자는 천여평에 달하는 공장건물을 증축하는 등 신설 공장으로 규모를 갖춘 외형상 견실한 회사로서 방화를 의심할 만한 아무런 단서도 없었음.

다. 조사 확인점

- (1) 필요 이상의 현장훼손
- (2) 조사중 이유없는 항의

라. 방화 추정 근거

- (1) 통화 자료를 추적한 결과 목격자가 사고 사실을 알려 주기 전에 이미 계약자가 사고 사실을 알고 있었던 점.
- (2) 리스사기-중고기계 또는 이중으로 리스 계약 체결
- (3) 방화 외에는 화인이 없었다는 점.
- (4) 발화 8시간 전에 모회사인 ○○수공산업(주)가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는 점.
- (5) 폐업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경영 상태가 좋지 않았다는 점.

(6) 16억 7천만원의 중복보험 가입 등

마. 처리결과

- (1) 1995년 6월 28일-최종 면책보고서 발송
- (2) 1995년 7월-SD사에 의해 채무부존재 소송 제기
- (3) 1996년 7월 9일-서울지검 방화구속(각 일간지 및 TV 등 보도)
- (4) 1997년 1월 24일-승소판결
- (5) 추정손해액-약 21억원(리스회사 약 10억 원 별도)

○○물산

가. 개요

1997년 6월 9일 03:00시경 포천군 가남면 금현리 ○○물산 내에서 원인 모를 화재가 발생하여 목적물 전체를 전소시킨 화재 사고임.

나. 일반적 상황

화재 경력도 없고, 동 파혁 판매 외에 합성파혁 공장을 가동하여 월 4천만원 이상의 매출액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안정적으로 보였음.

다. 조사 착안점

S보험회사가 실시한 과거 이재 경력 조회에서 1993년 11월 13일(D사 6억원), 1995년 11월 11일(S.J사 4, 5억원) 두 차례의 이재 경력이 있었던 사실.

라. 방화주정 근거

- (1) 과거 화재 경력을 은폐
- (2) 알리바이가 맞지 않음.
- (3) 공장에 있어야 할 재고 동산을 발화 장소로 이동
- (4) 과다한 부채(약 5억원)
- (5) 세 차례 사고 모두 화재 직전(67, 72, 102 일전)에 보험 가입
- (6) 사고 때마다 진술 내용이 상이

마. 처리결과

(1) 보험금 청구 포기 각서를 받고 면책 처리하였음.

(2) 추정손해액-39,000만원

(주)○○산업

가. 개요

1997년 12월 12일 화순군 화순읍 계소리 소재 (주)○○산업 내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되어 일부 기계 및 동산을 태우다 조기 진화된 화재 사고.

나. 현장상황

발생된 화재는 때마침 출근하던 종업원에 의해 조기 진화된 상황으로 3곳의 방화 흔적이 있었음.

다. 조사 착안점

- (1) 발화 장소가 수개소로 보였음.(S보험사 직원 제보)
- (2) 화재 전 부도 발생설

라. 방화주정 근거

- (1) 화원이 3개소라는 점.
- (2) 출장중이었어야 할 계약자의 형이 발화 직후 현장에 있었고,
- (3) 현장에 있던 계약자의 형이 소방서에 신고 도 하지 않았고, 진화 작업도 하지 않은 점.
- (4) 부도 다음날 화재사고가 발생한 점.
- (5) 기계 가동율이 30%로 감소된 점.

마. 처리결과

착수 다음날인 12월 20일 보험금 청구 포기 각서를 제출받고 1997년 12월 23일 면책 손해사정 보고서를 발송.

○○상사

가. 개요

1997년 1월 21일 연체 리스료를 수금하려 갔다



가 부도 사실과 기계 도난사고 사실을 발견하고 보험금 청구를 한 사고임.

나. 조사 착안점

(1) 리스이용자 부도

다. 사기 판단근거

(1) 도난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22대 중 10대는 경매, 1대는 채권자가 처분했다는 점.

(2) 22대 중 11대는 리스사기(불설치)였다는 점.

(3) 경찰서에 신고가 안되었다는 점.

(4) 7회의 리스료 연체가 있었다는 점.

라. 처리결과

1997년 4월 30일 면책 손해사정 보고서를 발행하였으며, 보험자는 계약자에게 면책 통지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음.

5 도덕적 위험의 손해사정

우리 나라 상법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길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하여 보험

자의 보상책임을 원칙적으로 면제하여 주고 있다.

보험자가 보상책임을 거절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 방화 또는 사기로 인한 사고이다. 따라서 손해사정시에 보험자의 대위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계약자가 불리하게 기소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방화나 사기를 조사하여야 한다.

보험계약자는 손해가 담보위험으로 발생하였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되며, 보험자가 부담보위험, 면책주장, 계약위반 등을 입증하여야 하므로 사고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발생하였으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직접행위나 사주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을 동시에 입증하여야 한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사고의 조사는 신속성이 중요하므로 사고 통보 내용에 신중하고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로 계약자의 행동이나 현장 상황 때문에 의심을 하게 되며 의심스러운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재산보험의 사고 발생시 도덕적 위험을 판단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가. 일반사항

(1) 보험금 지급을 심하게 독촉

(2) 보험용어 및 보험금 처리 절차에 익숙

- (3) 계약자가 모든 사항을 직접 처리
- (4) 서류 완비보다는 적은 금액이라도 합의
- (5) 사고 직전 모집인 등에게 담보범위 확인
- (6) 사고 직전 이혼이나 별거
- (7) 사고시 공교롭게도 계약자 또는 가족들의 현장 부존재
- (8) 보험가입 직후, 계약종료 직전, 보험금액 증액 직후 사고발생
- (9) 주거, 직업, 수입 등과 어울리지 않는 손해
- (10) 계절상품의 경우 시즌 종료시점에 사고 발생
- (11) 건물 또는 사업체의 인수 직후 사고 발생
- (12) 악성재고나 불법물건이 다수 포함된 사고
- (13) 복잡한 질권설정

나. 현장사향

- (1) 건물이 노후 되거나 낙후 지역에 소재
 - (2) 과다한 초과보험
 - (3) 부보 물건 중 불연 소잔물의 부존재
 - (4) 골동품, 피아노, 고가전자제품 등의 소잔물 부존재
 - (5) 성경책, 가족사진, 트로피 등 심리적 중요 물건의 부존재
 - (6) 통상 있어야 될 물건의 부존재
- 예) 부엌-주방기기, 냉장고, 찬장 등의 생필품
침실-보석, 고급의류 및 장난감
거실-TV, 음향기기, 음반, 피아노, 가구(금속장식)
지하/차고-공구, 자전거, 운동장비
사업장-재고상품, 주요 장부

다. 사고 관련 사향

- (1) 밤 11시 이후 사고 발생
- (2) 주말, 휴일 또는 휴업중에 발생

- (3) 소방서의 화재 원인조사 결과가 의심스러운 경우
- (4) 사고 당시 화재경보기가 작동되지 않은 경우 조사결과에 따라 면책은 다음과 같은 3 가지 형태로 확정된다.
 - (가) 계약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험자가 고의 중과실을 근거로 면책을 주장한다.
 - (나) 보험자가 계약자의 고의, 중과실을 이유로 채무 부존재 소송을 제기한다.
 - (다) 계약자가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다.

6 맷는 말

가장 조사하기 어려운 범죄 중의 하나가 고의 보험사고이다. 그 대표적 예인 방화의 경우 대부분 사후 제보에 의해 검거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그러나 적발이 어렵다고 하여 이를 방치한다면 그 폐해로 인하여 보험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질서도 크게 어지러워질 것이다.

보험인수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도덕적 위험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방화 등 고의로 의심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최대한 관심을 보여 도덕적 위험의 심리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경계심을 유발함으로써 제2, 제3의 유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고의가 의심되는 사고는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가능한 한 모든 정황증거를 수집하여 채무부존재 소송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⑥